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
|----------|------|
| 의안 번호 | 2816 |
|----------|------|

제출일자 : 2026. 5. 25.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경관법」제15조에 의거 달성군 경관계획이 재정비됨에 따라,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건축법령에 따른 용도 분류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공공건축물”, “일반건축물”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 기준을 조정(안 별표1 ~ 별표 3)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붙임)

(1) 「경관법」 제15조, 제28조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제17호, 제18호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1. 30.~ 2. 19.) 결과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작성 대상 아님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별표 개정규정의 적용례) 별표 1 개정규정, 별표 2 개정규정 및 별표 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 등을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제27조제1항제1호 관련)

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2층 이상이나 높이 6m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

나. 화원읍·옥연지·달성군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별표 2]

공공건축물(제27조제1항제2호 관련)

공공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달성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용도의 신축 건축물

나. 가목을 제외한 연면적 66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단,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

다. 군수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

| 구분 | 종류 | 비고 |
|--------------------|---|----------|
| 행정 및 공공기반 건축물 | 공공청사,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전 화국, 관광안내소 등 | 부속시설포함 |
| 복지관련 건축물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등 | |
| 교육 및 연구관련 건축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도서관 등(단,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 시에서 심의가능 |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관련 건축물 | 예술회관, 군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미술관, 박물관, 동식물원 등 | |
| 환경 및 위생관련 건축물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대기소, 공중화장실 등 | |
| 의료관련 건축물 | 병원, 보건소 등 | |
| 그 밖의 건축물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축물 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공동주택복합건축물은 제외한다) 다.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라.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별표 3]

일반건축물(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건축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협의)

나.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해당 도로로부터 지형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의 건축물
2.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경계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미터 이내 구역의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라.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7조제1항제1호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p> </div>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7조제1항제2호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공공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달성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660㎡이상의 신축하는 건축물. 다만, 설계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p> </div> | <p>[별표 1]</p> <p style="text-align: center;">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7조제1항제1호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중점경관관리구역 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목과 같다.</p> <p>가. 2층 이상이나 높이 6m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p> <p>나. 화원읍·옥연지·달성군청 중점경관관리구역은 2층 이상 건축물 및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p> </div> <p>[별표 2]</p> <p style="text-align: center;">공공건축물</p> <p style="text-align: center;">(제27조제1항제2호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공공건축물 중 「경관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은 달성군에서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과 같다.</p> <p>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 시설 용도의 신축 건축물</p> <p>나. 기목을 제외한 연면적 660㎡ 이상의 신축 건축물. 단, 설계 공모 방식으로 설계된 건축물은 제외</p> <p>다. 군수의 인·허가 대상이 아닌 건축물은 제외한다.</p> </div> |

| 구분 | 종류 | 비고 |
|---------------------------|---|-----------------|
| 행정 및 공공 기반 건 축 물 | 공공청사, 동주민센터, 경찰서, 지구대, 치안 센터,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국, 전화국, 관광안내소 등 | 부속시 설포함 |
| 복지관련 건 축물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 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 |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 축 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도 서관 등(단,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학교는 제 외한다) | 시에서 심의가 능 |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관 련 건축물 |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미술관, 박물관, 동식물원 등 | |
| 환경 및 위생 관련 건 축 물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대기 소, 공중화장실 등 | |
| 의료관련 건 축물 | 병원, 보건소 등 | |
| 기타 건축물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축 물 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공동주택복합건 축물은 제외한다) 다.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라.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 구분 | 종류 | 비고 |
|---------------------------|---|-----------------|
| 행정 및 공공 기반 건 축 물 | 공공청사, 읍·면행정복지센터, 경찰서, 지 구대, 치안센터, 소방서, 119 안전센터, 우체 국, 전화국, 관광안내소 등 | 부속시 설포함 |
| 복지관련 건 축물 |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청 소년 수련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체육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등 | |
| 교육 및 연구 관련 건 축 물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공공도 서관 등(단, 교육청에서 건립하는 학교는 제 외한다) | 시에서 심의가 능 |
| 문화 및 커뮤니티 활동관 련 건축물 | 예술회관, 구민회관, 전시장, 공연장, 관람장, 집회장, 미술관, 박물관, 동식물원 등 | |
| 환경 및 위생 관련 건 축 물 | 자원회수시설, 재활용센터, 환경미화원대기 소, 공중화장실 등 | |
| 의료관련 건 축물 | 병원, 보건소 등 | |
| 그 밖의 건축 물 | 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축 물 나. 중앙정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축물(공동주택복합건 축물은 제외한다) 다. 공공화장시설(화장장, 납골당) 라. 공공건축물의 야간경관개선사업 마.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 |

[별표 3]

일반건축물

(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건축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

나.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공장, 창고 용도 등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으로 계획 조성중인 곳은 제외)로서 다음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해당 도로로부터 지형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고속국도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2.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경계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는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라.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별표 3]

일반건축물

(제27조제1항제3호 관련)

「경관법」 제28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위원회 심의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목과 같다. 단, 「건축법」에 따른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 건축신고대상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10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협의)

나.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에 따른 공장 용도 및 같은 별표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 용도의 건축물과 산업단지 등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건축물은 제외)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다만, 해당 도로로부터 지형 또는 시설물 등으로 인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으로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의 경계선으로부터 양측 100m 이내 구역의 건축물

2. 「도로법」에 따른 일반국도의 경계선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광로·대로의 경계선으로부터 각각 양측 30미터 이내의 구역의 건축물

다.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의 공작물 중 같은 항 제8호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 및 철골 조립식 주차장

라. 그 밖에 군수가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관 계 법 령

□ 경 관 법

제15조(경관계획의 정비)

제7조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한 자는 5년마다 같은 조에 따른 경관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28조(건축물의 경관 심의)

-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경관지구의 건축물(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4. 그 밖에 관할지역의 경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건축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 ②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기준은 환경 관계 법률에 따른 환경성평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 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우수한 경관을 창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2조, 제55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기준의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준 완화 요청 및 결정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학교(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 나.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 다. 직업훈련소(운전 및 정비 관련 직업훈련소는 제외한다)
- 라. 학원(자동차학원·무도학원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교습소(자동차교습·무도교습 및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연구소(연구소에 준하는 시험소와 계측계량소를 포함한다)
- 바. 도서관

제17호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제18호 창고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과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또는 그 부속용도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 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일반창고와 냉장 및 냉동 창고를 포함한다)
- 나. 하역장
-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물류터미널
- 라. 집배송 시설